

# Q&A

## 1. 군인 간의 동성 성행위가 무엇이 문제인가요?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 군인간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추행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일반인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항문성교나 추행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군형법상 '추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추행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동성애도 하나의 성적 지향이고, 이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동성간 성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인 상호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그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닌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기 때문에 합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동성들만으로 집단생활을 하여야만 하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성 간에 폐쇄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동성 사이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유로운 외부출입이나 독

립적인 사생활이 보장되지 못한 채 폐쇄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면서 동성 사이에 생활관, 화장실, 샤워실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군대 내에서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일반 사회생활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2015년 7 월에는 취침시간에 생활관 내부에서 동성간 유사 성행위를 하던 병사들이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군인들은 군영 내에서 동성간 집단숙박을 하고 엄격한 상명하복관계에 있어 상관의 지시를 사실상 거역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인간의 동성 성행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군 내부에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가 만연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행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추행죄'는 동성 사이의 성적 행위를 한 군인과 이성 사이의 성적 행위를 한 군인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본 군대 내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성 사이의 성적 행위를 한 군인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됩니다.<sup>1</sup>

<sup>1</sup> 헌재 2016. 7. 28. 2012헌바258.



한편,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내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649건, 2015년에는 668건이었는데, 2016년에는 871건으로 전년 대비 30% 넘게 증가하였습니다.<sup>2</sup> 육군의 경우에는 동성 군인간의 성추행 사건이 두드러지게 발생하였는데, 2013년 2건에 불과한 동성 군인간 성추행 사건이 2015년에는 8건, 2017년에 상반기에만 21건이 발생하여 크게 급증하였습니다.<sup>3</sup>

2017년에는 현역 대위가 점심시간에 영내 숙소에서 3명의 군인(병사, 하사, 중위)과 동성간 성행위를 벌인 것이 발각이 되었고, 남성 동성애자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에 부내 내에서 동성 군인 간에 성관계를 했다는 글이 많이 올라온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남성 동성애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현역 군인들이 동성 군인 성행위 파트너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sup>4</sup>

군대 내에서 군인간의 동성 성행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군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입대할 때 하고 있는 에이즈 검사를 복무 중에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군인간의 동성 성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2017년에 또 다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군대는 동성 사이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며,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 사이의 성적 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방치할 경우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군대 내의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보상황과 징병제도하에서 군인간의 동성 성행위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합니다.

미국 뉴욕시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의 2016년 예산은 약 240만 달러(약 27억원)이었는데, 이 중

2 김학용 “軍 성범죄 늘고 동성에 급증…기강 확립해야”, 중앙일보, 2017년 10월 19일.

3 위 기사.

4 [단독]동성애법 통해 軍간부끼리 성행위, 동아일보, 2017년 9월 19일.